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02

발의연월일 : 2006년 4월 13일

발 의 자 : 장주식 의원외 6인

□ 제안이유

-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확산함으로써,
-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예우 및 지원 대상과 방법에 규정(안 제3조 내지 제8조)
- 우수기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창업지원, 품질경영 활동지원, 판로지원,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등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9조 내지 제13조)

○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기업애로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의안전문 : 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 관련단체"라 함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4. 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5. 기타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같음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②제1항 제2호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장 유망 기업 육성

제7조(기업 육성)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8조(선정 및 지정 등) ①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4조 제2호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2. 제4조 제3호의 ‘으뜸기업’은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3. 제4조 제5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

②우수기업인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나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우수기업인의 심사 및 선정은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기업 활동 촉진

제9조(창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 창업 강좌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경영 활동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으뜸기업 지정사업
2.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3. 기타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판로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의 판로개척,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박람회 등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산업·농공단지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①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14조(해소 노력)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애로 현장의 조사, 중앙정부 건의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구성 등) ①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

1. 도의 기업지원관련 실·과장, 시·군의 국·실·과장
2. 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시상) 제1항 중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를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본지침)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6>

②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육성계획의 수립)①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생략”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개정 2002.1.26>)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계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